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06가단75304 손해배상(자)

- 원 고
1. 이○○
 2. 심○○
 3. 이○○
 4. 이○○

원고들 주소 고양시 일산동구

원고 3, 4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이○○, 모 심○○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기억, 이세영, 장윤선

피 고 ○○보험 주식회사

서울 중구

대표이사 이○○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석한, 김태용

변 론 종 결 2008. 10. 17.

판 결 선 고 2008. 12. 19.

주 문

1. 피고는 원고 이○○에게 76,358,265원, 원고 심○○에게 5,000,000원, 원고 이○○, 이○○에게 각 2,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5. 4. 11.부터 2008. 12. 19.까지

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0%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이○○에게 516,310,678원, 원고 심○○에게 10,000,000원, 원고 이○○, 이○○에게 각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5. 4. 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기초사실

(1) 원고 이○○는 2005. 4. 11. 8:10경 출근을 위하여 동료 근로자인 ○○이 시동을 켠 채 정차하고 있던 41가○○호 레토나 승용차(이하 '피고차량'이라고 한다)의 조수석에 탑승한 후 접혀진 방석을 평기 위하여 일어서던 중 조수석 문틀에 머리를 부딪쳐 뇌좌상, 뇌경막하 혈종, 중증 뇌부종, 수두증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원고 심○○는 원고 이○○의 처, 원고 이○○, 이○○는 그의 자녀이고, 피고

는 ○○과 사이에 피고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4, 6, 2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면책 항변과 이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피고는, ①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이○○가 정차된 피고차량에 탑승 중 본인의 부주의로 문틀에 부딪친 것으로서 이는 차문의 통상적인 용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차량 문틀은 차량의 당해 장치로서의 기능이 아닌 단순한 장애물로서의 작용 밖에 없었으므로 이는 '운행 중의 사고' 또는 '운행으로 인하여 일어난 사고'라 할 수 없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고만 한다) 제3조에서 정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를 부담하지 않고, ② 문틀에 부딪친 정도의 외력과 원고 이○○의 뇌손상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피고는 손해배상책임 없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사고 발생 전후의 경과

원고 이○○는 이 사건 사고일 약 2달 전부터 연일 약리를 하였고, 이 사건 사고 3일 전인 4. 8. 금요일 18:30경 회식을 하러가기 전 처인 원고 심○○에게 전화로 '눈이 빠질 것 같이 뒷골이 아프니 약을 사 놓으라'고 하여 원고 심○○는 약국에서 혈액순환제 2일분을 지어왔으며, 원고 이○○는 회식 후 밤 12:05경 귀가한 후 잠이 들어 다음날인 토요일 9:00경 일어나 머리가 이상하다고 약을 먹고 다시 잠자리에 들어 17:30경 저녁식사를 한 후 다시 19:00경 잠이 들었고, 다음날인 일요일 9:00경 일어

나 머리가 좀 나은 것 같다고 하였으나 다시 저녁에 머리가 아프다고 하였으며, 다음 날인 이 사건 사고일 아침 평소보다 30분 정도 늦은 7:30경 일어나 머리가 아무래도 이상하다며 일단 출근을 한 다음 상태가 안좋으면 병원에 가기로 하였다.

원고 이○○는 앞선 기초사실 기재와 같이 8:10경 피고차량의 문틀에 머리를 부딪친 다음 출근 후에도 두통이 계속되어 한의원에 진찰을 받으러 갔다가 갑자기 구토증세와 함께 의식이 소실되어 10:30경 한의원에 도착한 119 구조대에 의하여 10:45경 용인○○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응급처치를 받은 후, 12:00경 ○○대학교병원에 도착하여 2005. 4. 11. 좌측 응급 개두술, 좌측 뇌경막하혈종 제거술을 받았고, 뇌부종 악화로 2005. 4. 16. 좌측 전두뇌 절제술 및 우측 두개골 제거술을 받았으며, 2005. 5. 10. 기관 절개술, 2005. 6. 20. 두개골 정복술, 2005. 8. 22. 뇌실복강간 단락술 등의 수술을 받았다.

원고 이○○는 근로복지공단에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임을 이유로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사고가 개인 소유 차량에 의한 출근 중의 사고로서 이를 업무외 재해로 보아 요양불승인을 하였다.

(2) 이 법원의 ○○대학교 법의학교실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위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 이○○의 좌뇌에서 발생한 광범위한 경막하 출혈은 대부분 특별한 혈관기형 등의 질환이 있음을 증명할 수 없다면 반드시 외상이 작용하여야 발생하는데, 이러한 손상은 속도의 급격한 변화 중 주로 가속-감속의 기전에 의하여 발생하며 이는 지극히 경미한 외력(심한 재채기, 땅바닥에 텔석 엉덩방아를 찧듯이 앓는 경우 등)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 차량 문틀에 부딪치는 정도의 외력과 원고 이○○의 경막하출혈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 보건

대, 원고 이○○에게 알콜 중독 등 현저한 출혈성 경향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상해의 부위와 같은 쪽 충격(동측충격, 同側衝擊)에 의한 손상의 경우 이 사건 사고 정도의 충격으로는 광범위한 경막하 출혈 및 뇌좌상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고, 오히려 이 사건 사고 전 다른 사고에 의하여 발생한 머리의 충격에 의해 위와 같은 뇌손상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3) 판단

(가) 피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자배법 제2조 제2호는 '운행'이라 함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자배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은 '자동차에 계속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장치로서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당해 자동차의 고유의 장치를 각각의 장치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운행으로 인하여'란 운행과 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미하는 것인바, 그 인과관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할 경우 피해자 보호에 소홀할 우려가 있어 이를 '고유장치 또는 고유장치의 사용으로 인한 사고'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고유장치 또는 고유장치의 사용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일어난 사고'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피고차량의 고유장치 또는 고유장치의 사용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하더라도 원고 이○○가 정차 중이던 피고차량에 탑승하여 출발하기 전 의자 위에 접힌 방석을 평기 위하여 일어나다 발생한 이 사건 사

고는 피고차량의 운행과 시간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이는 피고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외상에 의한 뇌손상에 있어서 직접 충격을 받은 부위의 반대편에 혈종이 생기는 대측충격(對側衝擊)에 의한 손상의 경우 동측충격(同側衝擊)에 의한 손상보다 훨씬 광범위한 뇌손상이 발생할 개연성이 큰 바, 원고 이○○가 방석을 퍼기 위하여 일어나면서 우측 머리를 문틀에 부딪쳤을 것으로 추정되고, 이로 인하여 좌측 뇌에 광범위한 경막하 혈종이 나타난 것으로 보이며, 앞에서 이 사건 사고의 전후 경과를 살펴 본 외에 달리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충격 외에 어떠한 다른 충격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대학교 법의학교실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는 동측충격에 의한 손상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의 충격과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6, 15, 17, 2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성남지사장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3.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이○○는 이 사건 사고 3일 전부터 두통을 호소한 점에 비추어 뇌에 원인을 알 수 없는 기왕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조수석에 앉아 방석을 퍼면서 문틀에 머리를 부딪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으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당시의 충격이 원고 이○○의 기왕증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쳐 손해의 범위가 확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야 하되 앞선 살펴 본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10%로 제한하기로

한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고,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는 월 5/12분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이하 '호프만식 계산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계산하며, 월 미만은 금액이 적은 쪽에 포함하고, 월 미만 및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린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기초사항

(1) 인적사항 : 1969. 11. 4. 생(사고 당시 만 35세 5개월 7일), 남자

(2) 가동연한 : 60세

(3) 기대여명 : 만 35세 남짓되는 정상적인 성인 남성의 기대여명의 35% 정도로 단축될 것으로 봄이 상당한 바, 2019. 10. 6.까지 생존할 것으로 추정된다.

(4)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원고 이○○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상 '두부, 뇌, 척수 IX-B-4'항에 해당하여 노동능력을 100% 영구적으로 상실하였다.

나. 일실수입

원고 이○○는 2000. 9. 1.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생산직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월 평균 1,817,776원(2004. 4.부터 2005. 3.까지의 수입인 21,813,320원×1/12) 상당의 수입을 얻고 있었으므로 정년인 57세까지는 위 금액을 기초로, 그 다음날부터 60세까지는 도시 보통인부의 일용노임 상당의 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아 월 평균 가동일수 22일을 곱한 금액을 기초로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이 306,393,843원이 된다.

다. 일실퇴직금

(1) 원고 이○○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05. 4. 12. 퇴직하면서 퇴직금으로 9,349,307원(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된 평균임금 월 2,025,221원)을 수령하였으며, 청년예정일은 2026. 11. 4.이었다.

(2) 계산 : 입사일로부터 정년까지의 예상퇴직금(월할계산)의 사고 당시 현가에 원고 이○○가 실제 수령한 퇴직금을 공제한 금액은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이 16,188,155원이 된다.

라. 치료비

(1) 기왕치료비 : 25,249,030원

(2) 향후치료비

(가) 보존적 물리치료 및 각종 검사비용으로 매년 8,124,000원이 여명기간까지 소요될 예정이다.

(나) 계산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위와 같은 향후치료를 받았다는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변론종결 다음날인 2008. 10. 18.부터 치료를 시작하는 것으로 보되, 계산의 편의상 여명기간까지 매 1년마다 연간 소요되는 비용이 기간 말일에 일괄 지출되는 것으로 보아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면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이 64,200,624원이 된다.

마. 개호비

(1) 필요성

원고 이○○는 강직성 사지마비 상태로서 일상생활에 있어 생존기간 동안 1일

8시간 성인 1인의 개호가 필요할 것으로 인정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 계산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이 244,916,967원이 된다.

바. 보조구

(1) 내역 : 특수 휠체어(2,800,000원, 수명 10년), 특수침대(700,000원, 수명5년), 육창방지용 매트(500,000원, 수명 5년)이 여명기간동안 소요될 예정이다.

(2) 계산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위 보조구를 구입하였다라는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변론 종결일 다음날 보조구를 구입하는 것으로 보고,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아래 계산표 기재와 같이 합계 6,634,040원이 된다.

종류:	휠체어	수명:	10	년	종류:	침대/매트	수명:	5	년
단가:	2,800,000			월	단가:	1,200,000			월
최초필요일:	2008-10-18	수치합계	1.4480		최초필요일:	2008-10-18	수치합계:	2.1497	
필요최종일:	2019-10-6	비용총액	4,054,400		필요최종일:	2019-10-6	비용총액:	2,579,640	

순번	필요일시	월수	호프수치
1	2008-10-18	42	0.8510
2	2018-10-18	162	0.5970

순번	필요일시	월수	호프수치
1	2008-10-18	42	0.8510
2	2013-10-18	102	0.7017
3	2018-10-18	162	0.5970

사. 과실상계

(1) 피고의 책임비율 : 10%

(2) 계산

663,582,659원(일실수입 306,393,843원 + 일실퇴직금 16,188,155원 + 기왕치료비

25,249,030원 + 향후치료비 64,200,624원 + 개호비 244,916,967원 + 보조구 6,634,040원) × 0.1 = 66,358,265원

아.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상해의 부위와 정도, 입원치료기간 및 치료의 경과, 연령, 원고들의 관계, 여명단축 등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원고 이○○ : 10,000,000원

(2) 원고 심○○ : 5,000,000원

(3) 원고 이○○, 이○○ : 각 2,50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경험칙,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이○○에게 76,358,265원(재산상 손해 66,358,265원 + 위자료 10,000,000원), 원고 심○○에게 5,000,000원, 원고 이○○, 이○○에게 각 2,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05. 4.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대하여 다툼이 상당한 판결선고일인 2008. 12.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주영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초사항]

사건번호	2006가다75304	진명	손해배상(자)
성 명		유병	부상
성별(남1,여2)	1	사고시 연령	35세 5개월 7일
생년월일		기대여명	14.497년
사고 발생일	2019-10-6	여명 종료일	2019-10-6
기동연한(세)	60	기동 종료일	2029-11-3

<노동능력상실률>

개별수치 %	증복합해
100.00%	100.00%

[일실수입]

	기간 초일	기간 말일	노임단가	일수	월소득	상실률	m1	호프만1	m2	호프만2	m1-2	적용호프만	기간일실수입
1	2005-4-11	2019-10-6		22	1,817,776	100.00%	173	130,0648	0	0.0000	173	130,0648	236,428,671
2	2019-10-7	2026-11-3		22	1,817,776	66.67%	258	174,9319	173	130,0648	85	44,8671	54,372,225
3	2026-11-4	2029-11-3	63,530	22	1,397,660	66.67%	294	191,6666	258	174,9319	36	16,7347	16,592,947
4													
5													
일실수입 합계액(원):													306,393,843

[기타 손해]

(1) 향후 치료비 물리치료등	(소요금액)	(지출시기)	m	(사고시현가)
				64,200,624원
				0원
(2) 기왕 개호비	(인정일수)	(1일비용)		(총액)
		0원		0원
(3) 개호비				244,916,967원
(4) 기왕 치료비				25,249,030원
(5) 일실퇴직금				16,188,155원
(6) 보조구				6,634,040원

일실수입+기타손해

663,582,659원

[과실상계]

90% 과실상계후 재산상 손해

66,358,265원

[공제]

차급치료비	0원	중 원고 과실분	0원
손해배상 선급			0원

[재산상 손해배상액] 66,358,265원

[위자료 및 합계]

	원고	위자료	재산상 손해	재산손해+ 위자료
1	이	10,000,000	66,358,265	76,358,265
2	수	5,000,000		5,000,000
3	o	2,500,000		2,500,000
4	o	2,500,000		2,500,000

기타손해액계산표

[기초사항]

사건번호	2006가단75304	
성명		
성별(남1,여2)	1	사고시연령 35세 5개월 7일
생년월일		기대여명 14.497년
사고발생일		여명종료일 2019-10-6
가동연한(세)	60	가동종료일 2029-11-3

[개호비 손해]

	기간초일	기간말일	개호비 단가	인원	월비용	m1	호프만1	m2	호프만2	m1-2	적용호프만	기간개호비
1	2005-4-11	2005-5-10	52,585	1	1,599,460	1	0.9958	0	0.0000	1	0.9958	1,592,742
2	2005-5-11	2005-8-31	53,090	1	1,614,820	4	3.9588	1	0.9958	3	2.9630	4,784,711
3	2005-9-1	2006-4-30	55,252	1	1,680,581	12	11.6858	4	3.9588	8	7.7270	12,985,849
4	2006-5-1	2006-8-31	56,822	1	1,728,335	16	15.4580	12	11.6858	4	3.7722	6,519,625
5	2006-9-1	2007-4-30	57,820	1	1,758,691	24	22.8290	16	15.4580	8	7.3710	12,963,311
6	2007-5-1	2007-8-31	58,883	1	1,791,024	28	26.4313	24	22.8290	4	3.6023	6,451,805
7	2007-9-1	2008-4-30	60,547	1	1,841,637	36	33.4777	28	26.4313	8	7.0464	12,976,910
8	2008-5-1	2019-10-6	63,530	1	1,932,370	173	130.0648	36	33.4777	137	96.5871	186,642,014
9												
10												
												개호비손해 합계액(원): 244,916,967

[향후치료비손해]

종류:	물리치료등	수명:	1년
비용:	8,214,000		월
최초필요일:	2008-10-18	수처합계	7,8160
필요최종일:	2019-10-6	비용총액	64,200,624원

순번	필요일시	월수	호프만수치
1	2008-10-18	42	0.8510
2	2009-10-18	54	0.8163
3	2010-10-18	66	0.7843
4	2011-10-18	78	0.7547
5	2012-10-18	90	0.7272
6	2013-10-18	102	0.7017
7	2014-10-18	114	0.6779
8	2015-10-18	126	0.6557
9	2016-10-18	138	0.6349
10	2017-10-18	150	0.6153
11	2018-10-18	162	0.5970

일 실 퇴 직 금 (일 반)

사 건	2006가단75304	정년연령(세)	57
성 명	이	정년퇴직일	2026-11-4
생년월일	---	실제퇴직일	2005-4-12
사고일	----	기수령퇴직금	9,349,307원
입사일	2000-9-1	노동능력상실	100.0%

- > <사고일과 실제퇴직일이 다른 경우만 입력>
- > <기수령 퇴직금이 확인되고 이를 기준으로 한 산출방식 이용시만 입력>

[기본요소산출]		사고발생시	실제퇴직시	정년퇴직시
재직기간	4년7월11일	4년7월12일	26년2월4일	< = 년 + 월/12 >
	월 할계산	4,583,333,333년	4,583,333,333년	26,166,666,667년
	일 할계산	4,613,698,63년	4,616,438,356년	26,194,520,55년
월 급여	2,025,221원	2,025,221원	2,025,221원	< = 월 할재직기간 x 월 급여 >
퇴직금 액수	월 할계산	9,282,262원	9,282,262원	52,993,282원
	일 할계산	9,343,759원	9,349,307원	53,049,693원
퇴직금의 사고시 현가	월 할계산	9,282,262원	9,282,262원	25,537,462원
	일 할계산	9,343,759원	9,349,307원	25,564,647원

- > < = 일 할재직기간 x 월 급여 >
- > < = 퇴직금액수 x 1 / (1 + 0.05 x (년 + 월 / 12)) >

[일실퇴직금 산출]

산출방식 A

기수령퇴직금을 그대로 공제하는 방식(실제퇴직일이 다른 경우 포함)
(정년시퇴직금현가 - 기수령퇴직금) X 상실율

계산결과	월 할계산시	16,188,155원
	일 할계산시	16,215,340원